

「2025년 4분기」
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6. 3.

재난안전실

보고 안건

(단위: 천원)

연번	예비비 사용건	소관부서	사용액
계			112,541
1	'손실보상금 소송' 예비비 사용 (금호로 확장 손실보상금 소송비용(세외수입보전))	도로계획과	112,541

□ '25.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112,541천원

- 손실보상금 소송 : 소송비용(세외수입보전) 112,541천원 집행

< 소송개요 >

- 사 건 명 : 2022누 68345 손실보상금(1심 2020구합 72683 손실보상금)
- 당 사 자 : (원고) 선우○○ / (피고) 서울특별시
- 사건공사 : 금호로 확장공사('16. 6. ~ '22. 6.)
- 청구원인 : 도시계획시설사업(금호로 확장) 관련 해당 건물(신금호 아이타워) 전면부 약 3.7m 절단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
- 판결결과 : 서울시 일부패소('25.4.30.)
- 판결내용 : 손실보상금은 이의재결 당시 감정결과와 1심 감정결과 모두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1심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함.(원고 주장 인용)
다만, 잔존건물보수비와 잔존건물 가격감소분에 대하여는 피고(서울시) 주장을 일부 인정함

- 원고는 서울시의 성동구 금호동 “금호로 확장공사”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(보상금액)에 부당함을 주장 하며 소를 제기함
- 1심 판결(서울시 패소) 후 우리 시(市)는 항소하였고, 최종 판결결과 재판부 에서 우리 시(市) 의견을 일부인용 후, 법무부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 종결함
-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시(市)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(112,541천원)에 대해 원고 선우○○의 채권자가 시 세외수입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세외수입금 일부(112,541천원)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음
- 이후 시 세무과의 세외수입 보전조치 요청에 따라 예비비(112,541천원)를 추심된 은행별 세외수입계좌로 입금하여 보전조치를 실시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112,540,892	
도로계획과	금호로 확장 손실보상금 소송비용 (세외수입보전)	배상금 등 (305-01)	112,540,892	'25. 12. 19.

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보고

- 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예비비 사용은 총 1건, 1억 1천 2백만원으로,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.
 - “금호로 확장공사” 당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주였던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시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
 - 우리시는 1심 패소하였으나, 2심에서 우리시 의견이 일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1억1천2백만원의 소송비용 지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이후, 원고의 채권자가 세외수입계좌에 채권추심을 하여 해당 금액이 세외수입금 일부에서 지급되었으며,
 - 세무과의 세외수입 보전조치 요청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추심된

은행별 세외수입계좌로 보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.

소송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

세외수입 보전 지연시 이자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바,

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

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억 1천 2백만원의 예비비를

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.

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

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